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2025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7명	2명
재적임원	7명	2명
참석임원	7명	1명

1. 일 시: 2025년 12월 23일(화) 14:00~15:00(회의소집 통보일: 2025년 12월 15일)

2. 장 소: 수성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 임원
 - 이사(7인): 이동구, 김선순, 김승환, 배영상, 신철범, 양혜주, 정관우
 - 감사(1인): 이재동
- 불참 임원
 - 이사(0인): 없음
 - 감사(1인): 서철원

4. 배석자: 김건우(법인사무국장), 문동섭(법인팀장)

5. 의결안건

- 제1호 안건: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이사장 선출의 건
- 제2호 안건: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안건: 수성대학교 총장 선임의 건
- 제4호 안건: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제5호 안건: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제6호 안건: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제7호 안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건
- 제8호 안건: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 건

이사장	이사	이사
이동구	김선순	양혜주

6.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 법인팀장 문동섭: 재적이사 7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나. 개회선언

- 이사장 이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학년도 제7차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 전차 이사회 보고

- 이사장 이동구: 전차 이사회인 2025학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해 주십시오.
- 법인팀장 문동섭: 전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하다.
- 이사장 이동구: 전차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다”라고 하다.

(의사봉 3타)

라. 의결사항

- 이사장 이동구: 제1호 안건인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이사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1호 안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법인사무국장 김건우: 학교법인 「정관」 제22조제2항은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구 이사의 임기는 중임되어 2029. 12. 26.까지이나 이사장의 임기는 2025. 12. 26.부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22조제1항에 의거 2025. 12. 27.부로 임기가 시작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 이사장 이동구: 제1호 안건인 이사장 선출 건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각 이사님들은 이사장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배영상: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맡아 현재까지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신 이동구 이사를 추천합니다.
- 이사 양혜주: 학교법인 운영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동구 이사께서 계속 이사장을 맡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장	이사	이사
이동구	김건우	양혜주

- 이사장 이동구: 또 다른 분을 추천할 이사님은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 참석이사 전원: (이동구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하다.)
- 이사장 이동구: 제1호 안건인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이사장 선출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동구 이사를 2025. 12. 27.부터 2029. 12. 26.까지 임기 4년의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2호 안건인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2호 안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법인사무국장 김건우: 학교법인은 2026. 2. 5.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승환 이사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학교법인은 「정관」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5조(임원의 임기),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에 의거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의 이사 1명을 정하여, 임기 2026. 2. 6.부터 2030. 2. 5.까지 4년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 이사장 이동구: 「정관」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에 의거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김승환 이사님은 잠시 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이사 제척사유로 퇴장하다.)

- 이사장 이동구: 김승환 이사의 후임이사 선임 건에 대하여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이사 신철범: 김승환 이사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대학의 산학협력 및 교류 활동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학교법인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리라 판단되어 김승환 이사를 중임하였으면 합니다.
- 이사 배영상: 동의합니다.
- 이사 양혜주: 재정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 찬성합니다.
- 이사장 이동구: 제2호 안건인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이사 선임의 건”은 배영상 이사의 동의와 양혜주 이사의 재정,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승환 이사를 중임하여 2026. 2. 6.부터 2030. 2. 5.까지 4년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김승환 이사 입장하다.)

이사장	이사	이사
이동구	김승환	양혜주

- 이사장 이동구: 제3호 안건인 “수성대학교 총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3호 안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법인사무국장 김건우: 학교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수성대학교에 재임 중인 제16대 총장 김선순의 임기가 2026. 1. 13.자로 만료됩니다. 김선순은 2018. 1. 14.부터 현재까지 수성대학교의 제15대, 제16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2025~2027)’, ‘대구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선정’, ‘사립대학 재정진단(재정건전대학) 통과’, ‘신입생 등록 4년 연속 100% 달성’, ‘수성구청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치’ 등의 성과를 달성하여 대학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김선순을 수성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김선순을 2026. 1. 14.부터 2030. 1. 13.까지 임기 4년의 수성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 이사장 이동구: 「정관」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에 의거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김선순 이사님은 잠시 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이사 제척사유로 퇴장하다.)

- 이사장 이동구: 제3호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참석이사 전원: (제3호 안건인 “수성대학교 총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회의 자료 등을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과정을 거친다.)
- 이사장 이동구: 제3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 제3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찬성하다.
- 이사장 이동구: 제3호 안건인 “수성대학교 총장 선임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선순을 2026. 1. 14.부터 2030. 1. 13.까지 임기 4년의 수성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김선순 이사 입장하다.)

이사장	이사	이사
이동구	김건우	김예주

- 이사장 이동구: 제4호 안건인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4호 안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법인사무국장 김건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정관」 등 교원의 징계 및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62조제2항 및 「정관」 제6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체계를 반영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외부위원 참여 기준 및 성별 구성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관」 및 징계 관련 법령을 반영한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 이사장 이동구: 제4호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참석이사 전원: (제4호 안건에 대하여 배부된 회의 자료 등을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과정을 거친다.)
- 이사장 이동구: 제4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 제4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찬성하다.
- 이사장 이동구: 제4호 안건인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붙임1]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5호 안건인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5호 안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법인사무국장 김건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정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규정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체계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외부위원 참여 기준 및 성별 구성 요건을 정비하고, 아울러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 사건의 처리 절차, 징계의결 절차, 징계사유의 시효 기준 등을 상위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관」 및 징계 관련 법령을 반영한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사장	이사	이사
이동구	김건우	양혜주

- 이사장 이동구: 제5호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참석이사 전원: (제5호 안건에 대하여 배부된 회의 자료 등을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과정을 거치다.)
- 이사장 이동구: 제5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 제5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찬성하다.
- 이사장 이동구: 제5호 안건인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붙임2]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6호 안건인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6호 안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법인사무국장 김건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정관」 및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규정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체계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외부 위원 참여 기준 및 성별 구성 요건을 정비하고, 아울러 재심청구 절차, 재심의결 등을 상위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관」 및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반영한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 이사장 이동구: 제6호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참석이사 전원: (제6호 안건에 대하여 배부된 회의 자료 등을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과정을 거치다.)
- 이사장 이동구: 제6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 제6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찬성하다.
- 이사장 이동구: 제6호 안건인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붙임3]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이사장	이사	이사
이동구	김건우	양해주

- 이사장 이동구: 제7호 안건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7호 안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법인사무국장 김건우: 학교법인 「정관」 제64조 및 개정된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원의 징계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대학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이사 3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이사, 교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정수, 외부위원 참여, 이사 비율 제한 및 성별 구성 요건 등 법령에서 정한 구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수성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학교법인 이사 중 3인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 이사장 이동구: 제7호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참석이사 전원: (제7호 안건에 대하여 배부된 회의 자료 등을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과정을 거친 후 김승환 이사, 양혜주 이사, 정관우 이사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다.)
 - 이사장 이동구: 제7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 제7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찬성하다.
 - 이사장 이동구: 제7호 안건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승환 이사, 양혜주 이사, 정관우 이사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되었음을 선포하다.
-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8호 안건인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 건”을 상정하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이동구: 제8호 안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법인사무국장 김건우: 2026.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재임용 심의 신청 대상자는 일반계약제교원 2명, 최초 일반계약제교원 5명, 교육중점교원 7명, 강의전담교원 7명으로 총 21명입니다. 교원인사부서는 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21명 모두 재임용을 신청하였습니다.
- | | | |
|-----|-----|-----|
| 이사장 | 이사 | 이사 |
| 이동구 | 김건우 | 양혜주 |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21명에 대하여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지침」에 의거 재임용 심사를 실시한 결과, 21명 중 7명이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하였고, 나머지 14명은 재임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2026. 3. 1.자로 재임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한 일반계약제교원 1명은 연구실적이 130%로 연구 실적 기준인 150%를 미충족하였으나, 임용계약기간이 2026. 2. 28.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중으로 재임용 심사를 재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초 일반계약제교원 5명과 교육중점교원 1명은 2024학년도 교수업적 평가 점수와 2025학년도 교수업적 중간 가평가 점수의 평균점수가 미충족하여 2025학년도 교수업적평가가 완료된 이후로 심사를 보류하여 재임용 심사를 재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6학년도 1학기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전임교원 14명을 2026. 3. 1. 자로 해당 직급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 이사장 이동구: 제8호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다.
- 참석이사 전원: (제8호 안건에 대하여 배부된 회의 자료 등을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과정을 거친다.)
- 이사장 이동구: 제8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 제8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찬성하다.
- 이사장 이동구: 제8호 안건인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 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붙임4]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7. 간서명 대표자 선임

- 이사장 이동구: 금일 회의록 간서명인으로 김승환, 양혜주 이사를 지명하고, 동의를 구하다.
- 참석이사 전원: 회의록 간서명인에 대하여 동의하고, 찬성하다.
- 이사장 이동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김승환, 양혜주 이사를 회의록 간서명인으로 의결함을 선언하다.

(의사봉 3타)

이사장	이사	이사
이동구	김승환	양혜주

8. 차기 이사회 개최 일정에 관한 건

- 이사장 이동구: 참석이사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이사회를 2026. 2. 10.(화) 14:00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다.
(의사봉 3타)

9. 폐회선언

- 이사장 이동구: 이상으로 2025학년도 제7차 이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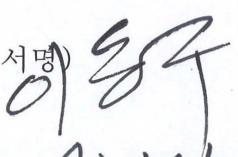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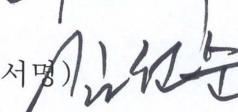
이사장

이동구 (서명)



이사

김선순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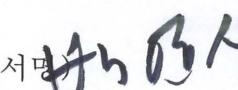
이사

김승환 (서명)



이사

배영상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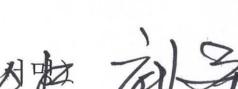
이사

신철범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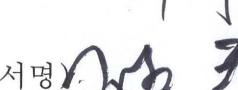
이사

양혜주 (서명)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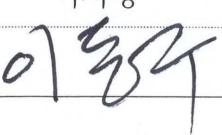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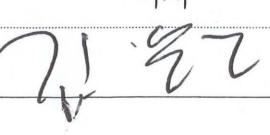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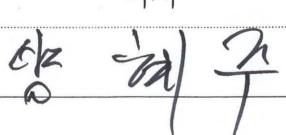
정관우 (서명)



감사

이재동 (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붙임1] 제4호 안건: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징계의 사유와 종류) ① 본 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의 <u>1에 해당하는</u> 때에는 학교의 장은 징계의결의 <u>요구를</u>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립학교법」과 <u>기타</u>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u>배치되는</u>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u>내외를 불문하고</u>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p>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p> <p>③ 정직은 1<u>월</u> 이상 3<u>월</u>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u>하지 못하며</u> 보수의 <u>3분의 2를</u> 감한다.</p> <p>④ 감봉은 1<u>월</u> 이상 3<u>월</u> 이하의 <u>기간</u>,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u>회개하게</u> 한다.</p>	<p>제4조(징계의 사유와 종류) ① 본 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할</u> 때에는 학교의 장은 징계의결을 <u>요구</u>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립학교법」과 <u>그 밖의</u>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u>어긋나는</u>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 <u>관련 여부에 상관없이</u>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p>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p> <p>③ 정직은 1<u>개월</u> 이상 3<u>개월</u>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u>할 수 없으며</u> 보수의 <u>전액을</u> 감한다.</p> <p>④ 감봉은 1<u>개월</u> 이상 3<u>개월</u> 이하의 <u>기간으로 하고</u>,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u>뉘우치게</u> 한다.</p>
<p>제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략></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u>5명</u>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 이사 <u>2인</u> 2. 당해 학교 교원 <u>2인</u> 3. 외부위원 <u>1인</u> <p>③ <생략></p> <p>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 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1명</u> 이상 포함할 것 	<p>제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좌동></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u>9명</u>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 이사 <u>3인</u> 2. 당해 학교 교원 <u>4인</u> 3. 외부위원 <u>2인</u> <p>③ <좌동></p> <p>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 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2명</u> 이상 포함할 것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장 이수경	이사 김현수	이사 양혜우

현행	개정안
<p>2. - 3. <생략> <u><신설></u></p> <p>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 교원 중에 제4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u>당해</u> 징계사건을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2. 교원 인사기록카드 3.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u>관련자</u>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징계등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 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p>② <생략></p>	<p>2. - 3. <좌동>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 교원 중에 제4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u>해당</u> 징계사건을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2. 교원 인사기록카드 3.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u>내용</u>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징계등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p>② <좌동></p>
<p>제1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 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u>심리함에 있어서</u>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u>행하기</u>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소환하여도 <u>불응한</u>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p>	<p>제1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 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u>심의할 때</u>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u>하기</u>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소환하여도 <u>응하지 아니할</u>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p>

이사장	이사	이사
01월21	김동수	양해주

현행	개정안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 ③ <좌동>
제15조(징계의결)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5조(징계의결) ① - ④ <좌동> <u>⑤ 학교의 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u>
제18조(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이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u>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18조(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좌동> ② 학교의 장이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u>재심의를 요구받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u> ③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4조 및 제15조제1항·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학교의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u>제1호 또는 제2호</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u>제3호</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학교의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u>「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u>「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u> 및 <u>「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이사장	이사	이사
이동미	김민수	양혜주

현행	개정안
<p>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 ③) <생략></p> <p>제22조(징계처리대장)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p>	<p>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p>1. <삭제> 2. <삭제> 3. <삭제></p> <p>② - ③ <좌동></p> <p>제22조(징계처리대장)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p>
<p>[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 ...<중략>...</p>	<p>[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 ...<좌동>...</p>
<p>2. 비위 유형</p> <p><신설></p> <p>다 - 타. 호 번호 한 칸씩 이동</p> <p>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p> <p>4. 혐의자의 평소 행실 여부</p> <p>5. 근무 성적(최근 2년)</p> <p>6. 그 밖의 사항</p> <p>...<생략>...</p>	<p>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p> <p>2. 비위 유형</p> <p>라. - 파. 호 번호 한 칸씩 이동</p> <p>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p> <p>거. 소극행정</p> <p>너. 부정청탁</p> <p>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p> <p>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p> <p>4. 혐의자의 평소 행실 여부</p> <p>5. 그 밖의 사항</p> <p>...<좌동>...</p>

이사장	이사	이사
이승희	김기현	양혜주

현행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인적사항 및 결과							인적사항 및 결과							
소속	직급	성명	현 소속 직위	협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의결)	소속 (신청 기관)	직급	상명	현 소속 직위	퇴직 예정일	협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의결)
			협의 당시 소속 직위							협의 당시 소속 직위				
											정년: 근무기간 만료: 그 밖의 사항():			
<u><신설></u>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p> <p>제19조제1항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이사장	이사	이사
이동수	김숙희	양혜주

[붙임2] 제5호 안건: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4조(징계의 사유와 종류) ① 일반직원이 다음 각 호의 <u>1에 해당하는</u> 때에는 이사장은 징계의결의 <u>요구를</u>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1. 「사립학교법」과 <u>기타</u>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u>교직원의</u> 본분에 <u>배치되는</u> 행위를 한 때</p> <p>2. 직무상의 <u>의무에</u>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p> <p>3. 직무의 <u>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u>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p> <p>②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p> <p><u><신설></u></p> <p>③ 정직은 1<u>월</u> 이상 3<u>월</u>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u>하지 못하며</u> 보수의 <u>3분의 2를</u> 감한다.</p> <p>④ 감봉은 1<u>월</u> 이상 3<u>월</u> 이하의 <u>기간</u>,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u>회개하게</u> 한다.</p>	<p>제4조(징계의 사유와 종류) ① 일반직원이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할</u> 때에는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u>요구</u>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1. 「사립학교법」과 <u>그 밖의</u>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u>직원의</u> 본분에 <u>어긋나는</u> 행위를 한 때</p> <p>2. 직무상의 <u>의무를</u>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p> <p>3. 직무 <u>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직원</u>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p> <p>②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p> <p><u>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u></p> <p><u>④ 정직은 1<u>개월</u> 이상 3<u>개월</u>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u>할 수 없으며</u> 보수의 <u>전액을</u> 감한다.</u></p> <p><u>⑤ 감봉은 1<u>개월</u> 이상 3<u>개월</u> 이하의 <u>기간으로 하고</u>,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u></p> <p><u>⑥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u>뉘우치게</u> 한다.</u></p>
<p>제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p> <p>① <생략></p> <p>② 징계위원회는 <u>5명</u>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학교법인 이사 <u>2인</u></p> <p>2. 당해 학교 교직원 <u>2인</u></p> <p>3. 외부위원 <u>1인</u></p>	<p>제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p> <p>① <좌동></p> <p>② 징계위원회는 <u>9명</u>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학교법인 이사 <u>3명</u></p> <p>2. 당해 학교 교직원 <u>4명</u></p> <p>3. 외부위원 <u>2명</u></p>

이사장	이사	이사
07 821	282	양 체 구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④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1명</u> 이상 포함할 것 2. - 3. <생략> <p><u><신설></u></p>	<p>③ <좌동></p> <p>④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2명</u> 이상 포함할 것 2. - 3. <좌동> <p>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이사장은 일반직원 중에 제4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u>당해</u> 징계사건을 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2. 일반직원 인사기록카드 3.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5. 혐의<u>관련자</u>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징계등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략> 	<p>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이사장은 일반직원 중에 제4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u>해당</u> 징계사건을 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2. 일반직원 인사기록카드 3.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5. 혐의<u>내용</u>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징계등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좌동>

이사장	이사	이사
0762	김강수	양혜주

현행	개정안
<p>제1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u>심리함에 있어서</u>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u>행하기</u>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소환하여도 <u>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u></p> <p>② - ③ <생략></p>	<p>제1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u>심의할 때</u>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u>하기</u>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로 소환하여도 <u>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u></p> <p>② - ③ <좌동></p>
<p>제15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u>교원의</u>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제15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u>직원의</u>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p> <p>② - ④ <좌동></p> <p><u>⑤ 이사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8조(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징계대상자 및 징계요구권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u>15일</u>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 재심청구서를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1. 재심청구의 취지 2. 재심청구의 <u>이유 및 입증방법</u> 3. 징계의결서 사본</p> <p><u><신설></u> <u><신설></u></p>	<p>제18조(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징계대상자 및 징계요구권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u>30일</u>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 재심청구서를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1. 재심청구의 취지 2. 재심청구의 <u>사유 및 재심에 필요한 증거자료</u> 3. 징계의결서 사본</p> <p><u>4.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첨부자료</u> <u>② 이사장이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 또는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위원회 또는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u></p>

이사장	이사	이사
이수경	김정숙	양예주

현행	개정안
<u><신설></u>	<p>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이사장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p>
<u><신설></u>	
제1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이사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u>제1호 또는 제2호</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u>제3호</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이사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u>「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u>「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u>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u> <u>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u> <u>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u> ② - ③ <생략>	<u>1. <삭제></u> <u>2. <삭제></u> <u>3. <삭제></u> ② - ③ <좌동>
제22조(징계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u>「별지 제7호 서식」</u> 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해 갖춰둬야 한다.	제22조(징계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u>「별지 제7호 서식」</u> 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해 갖춰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 ...<중략>...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 ...<좌동>...

이사장	이사	이사
이상근	김호숙	양혜주

현행						개정안														
<신설>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비위 유형	다 - 타. 호 번호 한 칸씩 이동		라. - 파. 호 번호 한 칸씩 이동		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거. 소극행정		너. 부정청탁		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													
	5. 협의자의 평소 행실 여부						4. 협의자의 평소 행실 여부													
	6. 근무 성적(최근 2년)						<삭제>													
	7. 그 밖의 사항						5. 그 밖의 사항													
	<생략>...						...<좌동>...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인적사항 및 결과																				
소속	직급	성명	현 소속 직위	협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의결)	현 소속 직위	퇴직 예정일	협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의결)									
			협의 당시 소속 직위				협의 당시 소속 직위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제19조제1항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사장	이사	이사
이동근	2122	양혜구

[붙임3] 제6호 안건: 「일반직원징계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일반직원징계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재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재심위원회는 <u>5명</u>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 이사 <u>2인</u> 2. 당해 학교 교직원 <u>2인</u> 3. 외부위원 <u>1인</u> <p>③ <생략></p> <p>④ 재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1명</u> 이상 포함할 것 2. - 3. <생략> <p><신설></p>	<p>제2조(재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좌동></p> <p>② 재심위원회는 <u>9명</u>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 이사 <u>3명</u> 2. 당해 학교 교직원 <u>4명</u> 3. 외부위원 <u>2명</u> <p>③ <좌동></p> <p>④ 재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2명</u> 이상 포함할 것 2. - 3. <좌동> <p>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제6조(재심청구) 징계대상자 및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u>15일</u> 이내에 <u>[별지 제1호 서식]</u>의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재심청구) 징계대상자 및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u>30일</u> 이내에 <u>해당 징계사건을 재심위원회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제4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u></p>
<p>제11조(재심의결) ① - ② <생략></p> <p>③ <u>심사위원회</u>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④ <생략></p> <p>⑤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p> <p>⑥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의결서’로 하여야 한다.</p>	<p>제11조(재심의결) ① - ② <좌동></p> <p>③ <u>재심위원회</u>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좌동> <p>④ <좌동></p> <p>⑤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p> <p>⑥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의결서’로 하여야 한다.</p>

이사장	이사	이사

현행	개정안
<u><신설></u>	<p>⑦ 이사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재심의결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재심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p>
<u><신설></u>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일부 터 시행한다.</p>

[붙임4] 제8호 안건: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 건

교원 구분	소속	성명	발령사항		
			직급	임용기간	임용일자
일반 계약제교원 (1명)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희	부교수	2026.03.01.~2032.02.29.(6년)	2026.03.01.
교육중점 교원 (6명)	간호대학 간호학과	최○경	조교수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보건복지경영과	김○비	"	"	"
	사회복지과	정○훈	"	"	"
	유아교육과	김○나	"	"	"
	제과제빵커피과	정○영	"	"	"
	피부건강관리과	김○경	"	"	"
장의전담 교원 (7명)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진	조교수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간호대학 간호학과	백○미	"	"	"
	간호대학 간호학과	서○경	"	"	"
	간호대학 간호학과	오○경	"	"	"
	간호대학 간호학과	육○경	"	"	"
	보건복지경영과	정○필	"	"	"
	유아교육과	장○애	"	"	"
총인원		14명			

이사장	이사	이사
이수근	김성근	양혜숙